



보도	2025.3.20.(목) 조간	배포	2025.3.19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장	최승록	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임	정상훈	(02-3145-8121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장	김수진	(02-3145-8285)
		담당자	수석	한성욱	(02-3145-8526)
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	책임자	팀장	천성준	(02-3145-8280)
		담당자	선임	김유진	(02-3145-8281)

**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**  
**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**  
**-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☎1332 → 3) 상담 실적 -**

###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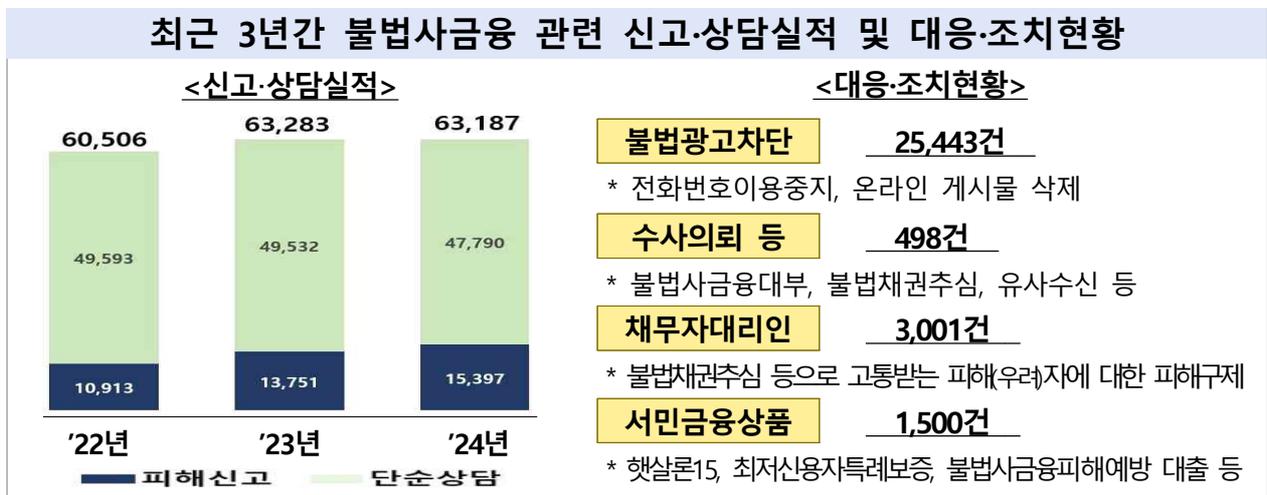
- '24년중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는 총 63,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·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. (피해신고 15,397건, 단순 문의 상담 47,790건)
  - 피해신고는 불법채권추심,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(14,786건)가 증가(+1,902건)한 반면, 유사수신(611건) 신고는 감소(△256건)했습니다.
-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,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  - 특히,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(온라인 불법광고) 및 범죄 수단(대포폰)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,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「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」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·제보(☎1332 → 3)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#### [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상담·지원 사례]

- ◆ (피해사실) '24.8월 A씨(40대 男)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,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씨 아내의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
- ◆ (상담 및 지원)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, 상담을 통해 「채무자 대리인 무료제도」를 안내 받아 접수하였으며, 금감원은 경찰에 해당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, 서민금융대출 상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.
- ◆ (지원결과)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무료 지원(채무자대리인)을 받아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고,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# 1. 신고·상담 및 대응·조치 현황 (☞ 자세한 사항은 '붙임1' 참조)

- **(신고·상담 현황)** '24년중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에 접수된 피해 신고·상담 건수는 63,187건(피해신고 15,397건, 단순 문의 상담 47,790)으로 전년(63,283건)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
  - **(피해신고)** 불법대부(14,786건), 유사수신(611건) 등 “피해(우려) 신고”는 15,397건으로 전년(13,751건) 대비 1,646건 증가(+12.0%)하였습니다.
    -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(14,786건)는 전년(12,884건) 대비 1,902건 증가(+14.8%)했으나, 유사수신 피해신고(611건)는 전년(867건) 대비 감소(△29.5%)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 - **(단순상담)** 한편, 불법사금융 제도 문의 등 “단순 문의 상담”은 47,790건으로 전년(49,532건)보다 1,742건 감소(△3.5%)하였습니다.
- **(대응·조치 현황)**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.
  - **(피해예방)**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**전화번호 이용중지** (5,573건) 및 **온라인 게시물 삭제** (19,870건)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.
  - **(수사지원)**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**498건**에 대해 **수사의뢰**를 실시하였습니다.
  - **(피해자구제)**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**3,001건**에 대해 「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」를 안내하여 피해구제를 지원하고,
    -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**1,500건**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.



## (참고)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### ① 불법 채권추심

- ▶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, 주민등록등·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(200여개)의 연락처·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공하고 하루 이자 8만원,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원금 50만원을 차용
- ▶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추가 금액을 신규로 빌려주겠다고 하여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냄
- ▶ 이후로도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전송하고 가족 2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음

⇒ (유의사항) 가족·지인의 연락처,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, 불법추심 피해(우려)발생시 금감원·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,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활용(붙임4 참고)

### ② 불법사금융업

- ▶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업체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았는데, 잠시 후 불법업자에게 연락이 와 대출 승인 조건으로 가족·지인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40만원 대출,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, 연장비 15만원 별도 조건으로 차용
- ▶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카카오톡 프로필을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음

⇒ (유의사항)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자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·경찰에 제보(붙임4 참고)

\* (확인방법) 파인(fine.fss.or.kr) → 금융회사 →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

### ③ 유사수신

- ▶ 사회초년생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무료로 재무설계 및 목돈 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갑 업체에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는 B로부터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음
- ▶ 미술품 렌탈수익 및 시세차익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으나, 4개월 후 업체는 잠적

⇒ (유의사항)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유인수단임을 명심하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

## II. 향후 계획

-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·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### ① 불법사금융의 유인경로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!

-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\*을 적극 추진하고,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(전화번호) 확인 및 차단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신속 차단\*\*하겠습니다.

\* 불법 스팸 문자 차단 대상 확대,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전심사 의무 강화

\*\*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를 '불법대부 광고' → '불법대부행위' (불법추심 등 포함)로 확대

### ② 보다 많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!

-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「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」 신청창구 확대\*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,  
\*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으로 확대 예정

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.

### ③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.!

- 신·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·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, 불법사금융 피해예방·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\*하겠습니다.

\* 「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」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('24.12~'25.3월)

- 한편,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(붙임2 참조)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\*를 요청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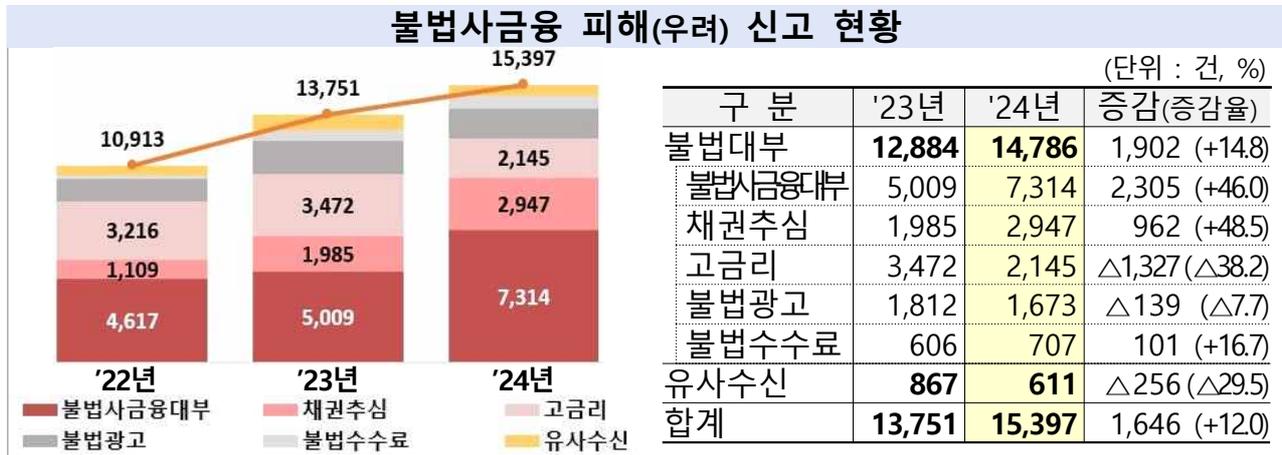
\*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행위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 실시 중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# 붙임 1

##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 신고·상담 현황

- **(피해신고)** '24년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(우려) 신고는 15,397건으로 전년(13,751건) 대비 1,646건(+12.0%) 증가
  - **[불법대부\* : 14,786건(+14.8%)]**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(7,314건, +46.0%), 불법채권추심(2,947건, +48.5%)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
    - \* (주요 유형)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요구, 선이자 공제, 부당한 연체료 부과 및 본인 이외 가족·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등
  - **[유사수신 : 611건(△29.5%)]** 신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·신기술 사업 투자 등을 빙자한 피해사례(236건)가 지속 발생



- **(단순상담)** '24년 중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문의 상담 건수는 47,790건으로 전년(49,532건)보다 1,742건(△3.7%) 감소
  - 불법사금융업체의 비대면 불법대부 취급 과정에서 정보제공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담이 증가(3,130건, +260건, +9.1%)
    - \* 불법사금융대부업자가 급전대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증, 사진 및 가족·지인의 연락처를 요구
  - 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법규 및 절차\*(43,945건, △1,858건, △4.1%) 및 대포통장 개설(385건, △179건, 31.7%) 관련 문의는 감소
    - \*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대상, 신청 절차 등 단순 문의

**유형별 단순 문의 상담 현황(단위 : 건, %)**

구분	법규 및 절차 문의 등	개인 정보	대포 통장	서민금융 신용회복	기타 법률상담	합계
'23년	45,803	2,870	564	182	113	49,532
'24년	43,945	3,130	385	201	129	47,790
증감(증감율)	△1,858 (△4.1)	+260 (+9.1)	△179 (△31.7)	+19 (+10.4)	+16 (+14.2)	△1,742 (△3.5)

#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

-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!**

-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, www.kinfa.or.kr)에서 소액생계비대출·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!
- 02 문자,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!**

- “당일대출”, “누구나 대출”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.
-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**
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!**

-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,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(☎1332→3번)으로 신고하세요!  
\* (지자체 등록 대부업체) 해당 지자체, (금융위 등록 대부업체) 금감원
-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%입니다!**

- 법정 최고금리인 연20%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!**

- 대출·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-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**

-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,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-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·보관하세요!**

-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.
-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!**

- 계약서, 입·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·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.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(☎1332→3번) 또는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세요!
- 10 피해 발생 시,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!**

- 최고금리 위반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를 당한 경우,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,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.  
\* 금감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(☎132)를 통해 신청

1. 피해 사실 확인

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 
확인하세요!

- ✓ 이자를 원금의 연 20%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, 가족·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.

\* 1일 0.0547%, 1개월 1.66%, 1분기 5.0%

2. 위반사실 고지

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 
중단을 요청하세요!

- ✓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.
- ✓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, 단호히 거절하세요.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.

3. 증거 확보

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!  
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!

- ✓ 계약서,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·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'증거'입니다

4. 피해 신고

피해 사실을  
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!

- ✓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(☎1332→3번)-경찰(☎112)에 신고하세요.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.

\*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·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

불법사금융  
피해 발생 시,  
대응요령

채무 당사자는 물론,  
관계인도  
무료로 법률서비스를  
받을 수 있습니다!



5. 구제 요청

무료 법률서비스 등  
도움을 요청하세요!

- ✓ 불법사금융(고금리 대출, 불법추심 등)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'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'를 신청하세요.  
\* 금감원(☎1332→3번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
- ✓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(금감원), 부당이득 반환청구, 손해배상 소송(법률구조공단)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✓ 온라인 등에 유포(우려)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(☎02-735-8994)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.

## 붙임 4

#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·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

### ① 피해 제보·신고

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에서 제보·신고 가능

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[spam.kisa.or.kr](http://spam.kisa.or.kr))로 신고

② 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·신고

③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

### 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내 신청 화면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> 민원·신고)

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

#### 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e-금융민원센터 ☞ +

상속인 금융거래 조희 ☞

#### 불법금융신고센터

-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

- 제보 상담하기
- 제보 상담내용 조회

②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

#### 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e-금융민원센터 ☞ +

상속인 금융거래 조희 ☞

#### 불법금융신고센터

-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

- 이용안내
- 제보하기
- 제보내역조회

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

#### 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e-금융민원센터 ☞ +

상속인 금융거래 조희 ☞

#### 불법금융신고센터

-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

- 이용안내
- 피해신고
- 신고내역조회

## ②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

- (전화 신청)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
- (온라인 신청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'민원·신고' → '불법금융신고센터' → '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'

### 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신청 화면

**지원조건**

- 지원대상
  -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(우려)를 입은 채무당사자
  -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(우려)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(채무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1건당 최대 5명)
- 지원내용
  - 채무자대리·대안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
  - 관계인 보호 지원·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 대응
  - 소송대리·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
- 지원기간
  - 최소 6개월 (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- 본인부담금
  - 채무자대리·미등록·등록 대부업 피해자 지원
  - 소송대리·미등록·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, 농·어업인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채무자대리인 신청지원 채무자 (125%)	2,785,556원	4,603,261원	5,893,321원	7,162,391원
농·어업인 (150%)	3,342,668원	5,523,914원	7,071,986원	8,594,870원

### [참고]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

💡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(우려)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

※ 지원대상 : 불법사금융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(우려)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

다만,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·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%(1인 가구 기준 月 278.6만원)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